

국·내외사업자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검토

-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왜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였는가

규제환경 변화

- ✓ 국경 없는 서비스, 국경 없는 규제?
: 영토 기반 규제 한계 노출
- ✓ 국내외 사업자 규제역차별 발생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주권

- ✓ 인터넷 공간에서의 주권개념의 변화?
- ✓ 국가주권에 기반한 관할권의 범위는?

-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주권과 규제형평성
- 정부 규제정책의 변화 방향

규제 역차별 사례

Google

You
Tube

VS.

DdM



NAVER

제한적
본인확인제

- ✓ 표현의 자유, 익명성의 가치, 언론의 자유....
- ✓ 이용자들의 해외 플랫폼 이동, 사업자들의 규제우회 ...

위헌결정(2012.8)

개인정보
취급

- ✓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정책
- ✓ 국내사업자의 각종 보호조치 의무 ...

청소년
보호

- ✓ 음란물 vs. 유해매체물
- ✓ 정부규제 vs. 자율규제

저작권
집행

- ✓ 다음 · 네이버 vs. 유튜브
- ✓ 갈등 · 분쟁, 협력, 사용료.....

인터넷 공간과 규제형평성

“ 규제형평성의 내용?”

집행대상자에 대한 **차별금지**, 공정 **경쟁 보장**, 수범
자에 대한 **집행예측성**, 규제의 **일관성**

...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분배기준 조절의 원칙’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역시 “규제
형평성의 원리” 가 준수 되어야 함

현황진단

주권에 기반한 국가규제의 무력화

- ☹ 사이버 망명, 사업이전 등 국외로 서버를 이전하거나 국외 서비스 이용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상실

- ☹ 규범의 세계화, 규범의 국제경쟁력 상실: 인터넷 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음란물 규제 등

규제품질 저하로 규제비용 과다

- ☹ 불필요한 규제로 관련 산업 불이익 및 손해 초래 : 低품질 규제 양산
* 판도라 TV, 아프리카TV, 유튜브... "승자독식과 쓸림현상".....
- ☹ 규제의 비현실성, 국제적 기준에 미흡한 규범설정,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

국민의 **신뢰저하**, 규제에 대한 **공감대 상실**, 부정적
준수율/집행율, 규제의 **일관성**
... “**법을 지키면 손해**” 라는 인식만 만연

개인정보 규제 관련 쟁점들.

- 고지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식가능성**” 의 정도?
 - 고지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인지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
 - 이를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침묵

인터넷 이벤트 대행 업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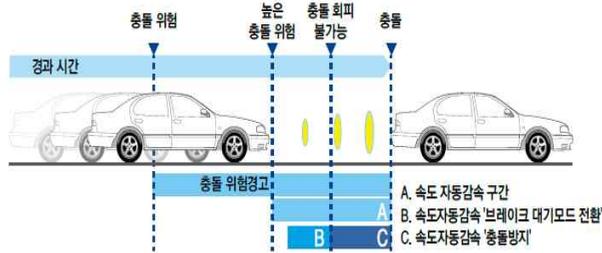
- 개인정보 동의 시 고지사항을 모니터 화면에 어떻게 구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규제기관 및 법원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2014년 1월 서울고등법원 판례, 상고심 계속 중)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고지사항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인식가능성만을 부여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용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및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인식, 확인하게 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여부를 판단,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이용자의 동의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동의라고 보려면 “미리” 법정 고지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알린 상태에서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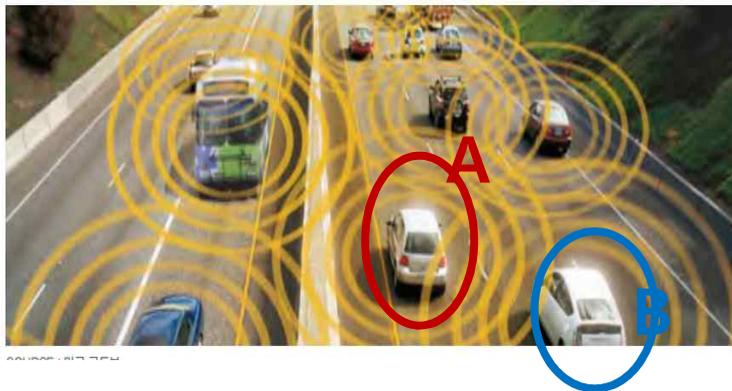
“Big Data, IoT환경” 의 신규서비스에 대한 법의 현행화 ?

- 실시간·부지불식의 정보유통, 정보전달 .. 매번 사전동의 **不可**
- 익명의 혹은 순수한 사물위치정보에 대하여도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이 구현되어야 하나?

<사례>능동형 충돌방지 시스템



능동형 충돌방지 시스템



- 달리는 A자동차에 A'라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
 위치 및 속도정보 = 사물정보
 = 사물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

✓ A' 는 개인정보처리자? ,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매번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 정보주체의 동의가 예상되는 사항이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까지 .. 매번 동의 요구

- **과연 정당한 형사처벌** 인가?

- ✓ 일반형법보다 높은 형벌 규정, 일본, 독일 등 외국에 비해 강한 형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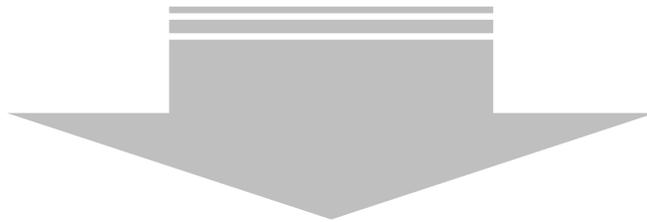
- 결국 ‘개인정보 처리자’ 는 면책을 위해 **동의서에**

- 지나치게 많은 사항을 고지**할 수 밖에...

- 정보주체는 **몰이해적 클릭 동의, 동의의 습관화**...

“ 과도한 사전동의 규제”

자세한 설명고지는 **이용자의 이해 곤란**,
동의 만능주의, 동의사항의 **過多**,
습관적 동의, **정보주체의 소외**, 사업자에게 **면죄부**,
이용자에게 책임 전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 “形式化”

- ✓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에게만 혜택이 발생하는 차별....

개 선 방 안

- **‘수집·이용’ 시 과도한 사전동의 규제 완화**
 - 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경우 사전동의 완화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합리화**
 - 실시간·부지불식의 정보유통, 정보전달 상대방 특정 곤란....
 - 개인정보처리자·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제3자 제공 허용하되, 사후 거부권 부여(Opt-Out 방식)
-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의 법적 지원**
 -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제3자 제공 등의 과정에서 침해가능성도 증대하므로 위치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이 발전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기술을 지원하는 법 제 도입 필요
 - 공인된 보안기술 적용 시 침해사고 등에서 행정제재 등 감면 조치도 필요

• 형사처벌 축소

-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전동의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 *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형사처벌 규정 없음
- 사기, 사생활 침해 등 불법한 수집, 이용, 제공시에만 형사처벌
- 약관, 개인위치정보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기재토록 하고, 위반 시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폐지,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

• 규제대상 위치정보의 범위 축소

- 사물의 **단순 위치정보**는 사생활침해와 무관하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축소

감사합니다.